

#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603<br>관련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6년 6월 16일  
제안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·보완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정책의 공유와 책임성을 높이고 곤돌라 시설의 이용 제한 근거와 이용료 감면 규정 마련, 남산발전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개정안에서 곤돌라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교통약자 및 그 보호자 1인으로 제안한 것을 공익적·복지적 측면에서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용범위는 이용자 본인으로 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 및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곤돌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서울시 공공시설 감면대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용범위는 이용자 본인으로 한정하며 그 외 감면이 필요한 대상 및 감면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
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
7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8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
9.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| 수<br>정<br>안  |
|---|--|--|
| <p>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생략)<br/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br/><u>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·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  | <p>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<br/>(개정안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11조(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<br/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11조(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/><u>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br/><u>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·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</u></p> | <p>제11조(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br/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|

|   |  |   |
|---|--|---|
|   | <p><u>로 정한다.</u></p>   |   |
| <p>제12조(곤돌라의 이용료)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| <p>제12조(곤돌라의 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  | <p>제12조(곤돌라의 이용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  |
| <p><u>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<u>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</u></li> <li>2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<u>65세 이상의 사람과 그 보호자 1인</u></li> <li>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과 그 보호자 1인</u></li> </ol> |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<u>장애인</u></li> <li>2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<u>65세 이상의 사람</u></li> <li>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</u></li> <li>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<u>국가유공자</u></li> <li>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<u>5·18민주유공자</u></li> </ol> |

|   |  |  |
|---|--|--|
|   |  | <p>6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<b>의사상자</b></p> <p>7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 제2조에 따른 <b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b></p> <p>8. 「<u>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 따른 <b>임산부</b> 및 「<u>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 따른 <b>다자녀 가족</b></p> <p>9. <b>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</b>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</p> |
| <p>&lt;신 설&gt;</p>  | <p>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  |
| <p>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  | <p>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  |
| <p>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b>한</b></p> |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-- <b>1회</b></p>             |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  |

|   |  |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차례</u>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| <p>----- . -----<br/>-----<br/>--.</p>   |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생략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 |                    |
| <p>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<u>간사를 둘 수 있다.</u></p>            | <p>⑤ -----<br/><u>간사 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된다.</p>                    |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&lt;신 설&gt;</p>  | <p><u>⑥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, 회의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&lt;신 설&gt;</p>  | <p><u>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⑦ (개정안과 같음)</p> |

##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·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·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과 그 보호자 1인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과 그 보

호자 1인

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4항 본문 중 “한 차례”를 “1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5항 중 “간사를 둘 수 있다”를 “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, 회의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<br/>(생 략)<br/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<br/>(현행과 같음)<br/><u>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·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 |
| <p>제11조(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생 략)<br/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11조(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/><u>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br/><u>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·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|
| <p>제12조(곤돌라의 이용료) ① (생 략)<br/><u>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2조(곤돌라의 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br/><u>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br/>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</p>   |

<신 설>

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 
(생략)

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 
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  
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 
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
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 
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 
(생략)

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 
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.

<신 설>

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
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 
따른 65세 이상의 사람과 그 보  
호자 1인
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 
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과  
그 보호자 1인

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 
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  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 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1회 -----  
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 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  
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.

⑥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 
회의일시, 회의장소, 참석자, 회의  
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

<신 설>

작성하여야 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 
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  
한다.